

총직원수  
387명  
(44직제외)

대상인원  
135명

필수유지인원  
63명

## 필수유지업무 협정서

2010 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 필수유지업무 협정서

## 【전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함)과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함)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쟁의권을 보장하면서 쟁의행위 시 환자들의 생명유지·신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법상 필수유지업무가 필요 최소한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협정을 체결하고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 제1조 【명칭】

본 협정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필수유지업무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 협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42조의2에서 제42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제22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대상 직무,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필요인원 등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유일교섭단체】

사용자는 노조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의료원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필수유지대상직무」라 함은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 2의 별표1에 의거하여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의 직무를 정한 부속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말한다.
3. 「필수유지업무인원」이라 함은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조합원을 포괄하는 노동자 전원을 말한다.
4.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비율」이라 함은 해당업무의 평상시 운영수준에 비하여 쟁의행위기간 중에 당해 업무를 필요최소한으로 유지 운영되어야 할 비율을 의미한다.

5. 「필수유지업무조합원」이라 함은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이 협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 근로시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되는 조합원을 뜻한다.
6.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7. 「중환자」라 함은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말한다.
8. 「수술」이라 함은 수술실에서 행하는 응급수술을 말한다.

#### 제5조 【적용범위】

- ① 이 협정은 노조와 사용자 및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본 협정은 단체협약과 별개임을 확인한다.
- ② 기존 단체협약상의 협정근로자 조항은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6조 【협정체결의무】

- ① 노조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본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노사자율 타결할 수 있도록 노사 상호 노력한다.
- ②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③ 협정의 유효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사업의 중대한 변경, 법령의 개정 등 본 협정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 【노동조합의 의무】

- ①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을 위하여 성실히 교섭하며, 쟁의행위 시 본 협정에서 합의된 대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한다.
- ② 노조는 이 협정에 의한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지 또는 방해하지 않는다.

#### 제8조 【사용자의 의무】

- ① 사용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와 다른 노동자(필수유지업무인원 중 쟁의행위 참가자,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의 조합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쟁의행위 불참 및 근로를 이유로 격려금 지급, 휴가 부여, 승진고과 상위 배정, 각종 교육 참가 우선권 및 인사배치 전환 등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및 유지·운영비율】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의 필수유지업무 범위 및 유지·운영비율은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0조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의 원칙】

노조와 사용자는 필수 유지업무 협정 체결 시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협정에 대한 논리를 진행한다.

1. 유지·운영비율 결정시에는 총인원이 아니라 off 및 휴직자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1일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한 유지비율임을 확인하며, 교대제의 경우 1일 근무인원과 1duty 인원을 동시 명기한다.
2. 유지·운영비율 산정 시 야간 및 당직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합의서에 의한다.

### 제11조 【필수유지업무 관련 이행 원칙】

- ① 노조와 사용자는 쟁의행위 개시 전 응급환자를 제외한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위하여 노력하며, 중환자실 환자를 제외하고 신규환자의 입원을 금지한다.
- ② 입원환자 중 행려환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어려운 환자는 중환자실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만큼 중환자 병상을 증설할 수 있으나, 현재 개설되어 있는 중환자실 공간에 한하며 새로이 다른 중환자실을 개설할 수는 없다.

### 제12조 【필수유지업무 이행의 절차】

노조와 사용자는 필수유지 업무 이행 시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① 노조는 쟁의행위 개시 24시간 전까지 본 협정이 정하는 필수유지대상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조합원을 포함하여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할 근무자 명단을 쟁의 행위 기간, 쟁의행위 규모에 따라 적정기간의 근무자, 근무시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통지받은 인원 중 쟁의행위 기간 중 근무해야 할 인원을 검토하여 확정되었음을 쟁의행위 개시 12시간 전까지 노조와 그 노동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② 전항의 명단은 서면 통지일 현재 필수유지대상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 중 쟁의 행위기간 동안 근무해야 할 명단 외에 예비적으로 1인을 포함한다.
- ③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통지받은 인원이 휴가, 결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

지하고, 노조는 이를 대체할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때 지체 없이 필수유지업무 분야에서 종사할 자를 지명하여 노조와 그 노동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노조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분야에서 종사할 자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나, 비조합원의 우선 근무 지정이 선차되어야 한다.
- ⑤ 사용자는 당초 필수유지업무 대상으로 지명된 자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특정 사정에 의해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그 특정 사유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노조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노조는 그 특정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을 시, 사용자가 임의로 의무를 면할 수 없도록 하며, 추가 근무 인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사회적 책무 및 긴급구난 시 협조】**

쟁의행위 기간 중이더라도 진료권역내에서 천재지변, 대형사고, 법정전염병 등으로 대규모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노사는 공동 대처하기로 한다.

**제14 조 【기타】**

본 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사 신뢰에 근거하여 노사 관행에 따른다.

**제15 조 【협정서의 보관】**

본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노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부 칙 】**

본 협정은 협정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010 . 12 . 31 .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원 장 이 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지부

지부장 이 현 주

